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 등에 추가〉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155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2
2. 현행 제도와 개선 논의	4
3.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 등에 추가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영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응급 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u>전기통신</u> 을 이용	2. ----- ----- ----- <u>전기통신</u> 또는

현행	개정안
한 접근 금지	<u>「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분 법」 제2조제1호의 <u>전기통신</u> 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 ----- ----- <u>전기통 신</u> 또는 「우편법」 제1조의 2제1호의 <u>우편물</u> -----
3의2. ~ 4. (생략)	3의2.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도와 개선 논의

가. 스토킹처벌법의 구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제1조), 스토킹범죄의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¹⁾

○ 스토킹처벌법은 총 3장 20조로,²⁾ 동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리 절차 및 벌칙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스토킹처벌법의 구조 >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1~\$2)	총 칙	스토킹처벌법의 목적,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등 용어의 정의
제2장 (\$3~\$17-4)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 절차	스토킹범죄의 신고,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제3장 (\$18~\$20)	벌 칙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감명령의 병과 등

1) 스토킹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총 3장 21조로 시행되었으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인 제21조가 2023년 7월 11일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3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음.

나. 스토킹범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동법상 스토킹 행위(이하 “스토킹”)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또는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접근하거나 상대방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을 지속·반복하는 것임(제2조제1호·제2호).³⁾
- 동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있음.
-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의 중지 및 스토킹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사법경찰관 등이 취하는 제지, 접근 금지 등 조치임.

3)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 스토킹 제지,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응급조치라고 함(제3조).⁴⁾

또한, 사법경찰관은 스토킹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고자 등의 요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사의 청구나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함(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⁵⁾

-
- 4)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5)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

- 반면,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再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여 이루어지는 접근 금지 등의 조치임.

검사는 스톱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제8조 및 제9조).⁶⁾

- 긴급응급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잠정조치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 등도 잠정조치로 할 수 있음.

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6) **스토킹처벌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 따라서 동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각 조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 >

구 분	요 건	절 차	내 용
응급조치	스토킹 실행 중	사법경찰관리 조치	스토킹 제지, 범죄수사, 보호조치 요청절차 안내 등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지속·반복 우려 및 긴급성	사법경찰관 조치 - 검사 청구 - 법원 사후승인	접근 금지(직접, 전기통신)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집행	접근 금지(직접, 전기통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 각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면, 응급조치의 경우 실행 중인 현재의 스토킹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래적인 금지를 명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제20조).⁷⁾

- 제9조제4항은 잠정조치에 따라 부착된 전자장치의 효용을 훼손

7)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 3. (생략)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략)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므로, 제20조제1항제1호 역시 잠정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해당함.

다.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 논의

□ 긴급응급조치 등은 장래 발생가능한 스토킹(범죄)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현행법에서는 그 금지의 범위가 스토킹 유형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직접 또는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에도,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는 직접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음.

< 스토킹과 보호조치에 따른 금지행위 간 비교 >

구 분	위법행위		보호조치별 금지 대상 행위	
	스토킹	스토킹범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직접 접근	○	○	○	○
우편 접근	○	○	-	-
정보통신망 접근	○	○	○*	○*

* 긴급응급조치 등의 금지 대상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임.

따라서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내려진 후 이루어진 우편을 이용한 접근은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할지언정,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됨.

- 다만, 보호조치 위반의 죄는 통상 스토킹범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이해되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가 제한됨.⁸⁾

8) 상상적 경합 시 중한 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하므로, 보호조치 후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스토킹 범죄로만 평가되는 경우와 보호조치 위반죄로도 평가되는 경우의 법정형은 같음. 실무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할 경우 양형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으로는, 사법정책연구원, 스토킹 범죄의 재판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2024), 314-315.

-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잠정 조치 등과 유사한 성격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률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는데, 이중 보호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포함된 법률은 청소년성보호법뿐이고, 나머지 법률은 직접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음.⁹⁾¹⁰⁾¹¹⁾

< 주요 법률의 피해자 보호조치(접근 금지 관련) >

구 분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긴급)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명령	(긴급)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명령	보호처분
직접 접근	○	○	○	○	○	○	○
우편 접근	-	-	-	-	-	-	○*
전기통신 접근	○	○	○	○	○	○	○

* 보호처분의 금지 대상은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임.

- 9)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및 보호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의 응급조치는 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에, 가정폭력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각각 상응하는 조치임. 이와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처분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보호사건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에는 없는 유형의 조치이며, 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역시 스토킹처벌법에는 없는 유형의 조치임.
- 10) 아동학대처벌법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구조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유사함.
- 11)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보호법의 보호처분은 그 명칭이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보호처분과 유사하나,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보호처분은 가정폭력·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보호사건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처분은 성범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범죄사건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조치임.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내용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¹²⁾

○ 지난 제21대국회의 경우 유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관련 법률안(제21대국회) >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내용	비 고
2121200	최영희	2023.04.10.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잠정조치에 추가	임기만료폐기
2121317	유정주	2023.04.12.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추가	임기만료폐기

○ 2025년 6월 현재, 동 법률안 외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어 있음.

<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관련 법률안(제22대국회) >

의안번호	대표발의	회부일	주요내용	비 고
2208204	정일영	2025.02.18.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추가	미상정

12)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글, 401-403 등. 한편, 본 글에서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따른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3.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 등에 추가

가. 검토의견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행 제4조 및 제9조제1항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 스토킹의 유형을 추가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등의 보호조치가 있는 후 이루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은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것이든, 우편을 이용한 것이든 모두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게 됨.

- 현재는 직접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함.

□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서는 다음의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개정안은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현행 제2조제1호 다목 등은 ‘우편’을 이용한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 전반의 통일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생 략)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또는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u>우편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u>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생 략)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개정안과 같음)
1.·2. (생 략)	1.·2. (개정안과 같음)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또는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u>우편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u>
3의2. ~ 4. (생 략)	3의2. ~ 4. (개정안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개정안과 같음)

- 현행 제2조제1호 다목 등은 ‘우편’을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보다 앞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우편, 전기통신의 순서로 기재함.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목적에 공감하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종류는 스토킹범죄의 특징, 스토킹행위자의 기본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국민의 법감정, 해외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
